

무역 Claim에 관한 상식(9)

4-10 보험에 관한 Claim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에 관한 Claim”이라 함은 “보험에 관한 무역 Claim” 즉 매매쌍방간에 제기되는 Claim을 말하는 것이며 소위 “보험 Claim, 즉 하주와 보험회사간에 제기되는 Claim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F.O.B., C.&F. 계약에 있어서 Buyer는 자기자신에 비용으로 해상보험을 부보하는 것임으로 화물의 손상멸실이 항해중에 일어났을 때에는 품질과 포장에 관한 무역 Claim은 일어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보험에 관한 클레임이 일어나는 것은 C. I. F. 경우뿐인데 그 형체는 (1) Seller의 부보 생략 또는 태만에 기인하는 구상

(2) 전시보험료(Negligence in Effecting insurance)

매매쌍방간에 Firm Offer로부터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에 보험범위를 명백히 결정짓고 Seller가 계약조건대로 부보한다면 이런 Claim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하 Claim발생의 여러 경우를 기술한다면

(가) 매매계약상 부보범위의 타협이 불충분할 때

Seller가 자의로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내에서 부보했을 경우 부보범위 외에서 매상사고가 발생하여 화물이 손상 멸실 하였을 때에 Claim이 종종 발생한다. 부보범위는 각국의 상품상의 관습, 품질, 품종등에 의하여 천차만별함으로 계약상 명기하는 것이 안전한 Claim방책이 된다.

(나) 계약상 결정된 부보조건대로 Seller가 부보를 하지 않을 때 Seller가 부주의 또는 부보하지 않음으로서 화물이 손상 멸실하였을 경우 Claim이 발생한다.

이상 (가) (나)의 경우에 있어서 Seller가 부보만 잘하였으면 Buyer가 당연히 보험회사에 구상해서 보험금 지불을 받았을 터인데 Seller의 불찰로 인하여 Buyer가 보험회사에 구상하지 못하게 됨으로 그 대신 Seller에게 구상하는 것이다.

(2) 전시보험료(War Risk Premium)

전시보험료는 보통 평시에는 저율이지만 일단 국지적으로 전쟁이나 전쟁 유사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수배 내지 수백배로 보험료율이 폭등한다. 이때에 상등한 보험료는 계약상 Buyer부단이라고 았았더라도 국제관습상 Buyer부단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상에 명기하지 았았기 때문에 Buyer와 Seller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4-11 신용상에 관한 Claim

외국무역에 있어서 Importer는 자기의 취인은행인 외국환취인은행(Foreign Exchange Bank)과 상업신용상약정서(Commercial L/C Agreement)라고 칭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해 두고 수입계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Importer는 그 은행에 대하여 상업신용상의뢰서(Application for Commercial L/C)를 제출하여 그 의뢰서와 일치하는 신용상을 해외 Seller에게 개설하게 한다.

이때에 Buyer의 취인은행으로서는 신용상을 개설함에 있어서 그 의뢰한 신용상의 내용이나 문언을 Buyer의 수입계약의 내용이나 조건과 비교할 권한은 전연없고 신용상의 개설은 다만 Buyer의 의뢰에 의해서 비로서 그 의뢰내용과 일치하게 개설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Buyer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다. 즉 Buyer의 신용상개설의 의사는 Buyer의 수입계약상의 의무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악질적 Buyer는 수입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하락하였을 때에는 취인은행에 대하여 신용상개설을 의뢰하지 않는

일이 많다. 따라서 해외 Seller는 신용상이 개설되지 않음으로 해서 화물을 적출하지 못하게 되며 Seller는 이로 인하여 입는 피해를 당연히 Buyer에 대하여 신용상불개설의 Claim을 청구하게 된다. 이외에도 Buyer의 부주의 또는 약의에 의해서 수입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신용상을 개설하는 예가 종종 있다. Seller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당연히 Buyer에게 Claim할 권리가 있다.

이하 몇 가지 신용상에 관한 Claim의 형태를 기술한다.

(1) 신용상 불개설(Non-opening of L/C, Non-establishment of L/C)

이 Claim은 Seller가 Buyer에게 대하여 구상하는 Claim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신용상이 없이는 Seller가 상품을 선적할 수 없으며 수출계약을 이행될 수 없는 까닭이다.

신용상불개설로 인한 Seller의 피해상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전매상에서 오는 시가의 차손청구

수출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까닭에 Seller는 부득이 이것을 전매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시가의 하락으로 인한 가격상의 차손을 구상한다.

(나) 제조상의 차손

신용상 개설을 예정하고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결국 신용상 불개설로 인하여 Maker가 입는 제조상의 차손을 청구한다.

(다) 수송비 등의 손실

화물을 적출항까지 수송한 비용에 대한 손해를 구상한다.

(라) 폐기처분에 대한 손실

신용상 불개설로 인하여 제조완료의 상품 또는 제조 도중의 상품을 Scrap로 폐기처분한데 대한 손실을 청구한다.

(마) 선적취소에 대한 손실(Dead Space Loss)

예약한 Ship's Space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선박회사에 지불한 운임의 손실에 대한 Claim이다

그러나 Buyer의 L/C불개설에 대하여 Buyer가 면책되는 수종의 예가 있다. 즉 수입국 정부가 돌연 수입금지(Embargo)하는 경우, 계약상 지정된 소비공장이 화재 소실되었거나, 또는 장기 Strike에 의한 조업 정지 등 돌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한하며 면책된다. 그러나 이에선 반드시 불가항력의 사태발생이 입증되지 않으면 면책될 수 없다.

(2) 신용상 개설의 지연(Delay in Opening L/C), 매매계약사에 약정한 기한내에 신용상의 불개설 신용상의 개설기한내에 Buyer가 개설하지 아니하고 기한후에 L/C를 개설하는 것은(신용상개설연신) Seller로서는 신용상 불개설과 꼭 같은 손실을 입을 때가 있다. 이때에 Seller는 Buyer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실을 구상할 권리를 갖는다.

(3) 부당한 L/C개설(Opening of Wrong L/C)

계약조건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L/C를 개설해 왔을 때에 Seller가 입는 손실에 대한 구상이다.

이와 같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L/C 개설은 Buyer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기인하는 수도 있고 악의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무역상 Wrong L/C의 구체적실예는 무수히 있는바 그것은 품종, 적기, 단가, 수량, 가격, 보험료, 검사, 검품조건 등에 대한 것들이 있다.

(4) 신용상의 부정정(Non-Amendment of L/C)

Wrong L/C를 개설한데 대하여 Seller가 그 정정을 촉구한 데도 불구하고 Amend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Seller가 입는 손해의 Claim이다.

(5) 선적기한을 무시한 L/C개설

선적기한은 Seller의 계약의무로서 신용상의 유효기한과 관련하여 중요한 계약조항이다. Buyer가 선적기한을 무시하고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L/C 개설은 Buyer의 계약위반이므로 Seller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요구에 대한 Buyer의 불응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를 청구하게 된다.

(6) 불완전한 L/C개설

계약조건과 상위한 L/C를 말한다. 일단 불완전한 L/C를 개설하였더라고 후일 Buyer가 계약조건과 합치하도록 정정 수속을 하면 완전한 L/C가 되겠지만 끝내 정정수속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Seller가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Seller는 이 피해에 대한 구상 Claim을 제기한다.

4-12 대금결제에 관한 Claim

상품대금 기타 결제에 관한 Claim인데 매매양방 어느 편에도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하 분설하면

(1) 대금지불불이행(Non-Payment)

세계무역은 98%까지 신용상에 의하여 행해지며 대금결제는 선적 전에 L/C 개설로서 보정된다.

그러나 L/C에 의한 결제라 할지라도 신용상 개설은행의 파산에 의하여 어음이 부도되는 예가 있다. 이때에 Seller는 Buyer에 대하여 대금불이행에 대한 Claim을 청구한다.

또한 예외적인 결제로서 D/A, D/P 등의 어음 즉 신용상에 의하지 아니하는 추심어음(Collection Bill)의 경우에는 Buyer의 고의, 악의 또는 파산등에 의하여 대금부도가 왕왕 일어남으로 Seller는 엄중한 신용조사를 하여 Buyer를 엄선하여야 할 것이다.

(2) 과당지불분의 부정산

Importer가 외국상사로부터 수입한 상품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실제 수입한 상품대금보다 초과 지불했을 경우 그 초과 지불분에 대한 Claim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입상A가 수출상B로부터 철광석 9,000t을 [수입항검량최종조건]으로 매입하였다. 이때에 A사의 B사에 대한 지불조건은 [적지척량의 3% 감] (3% Less than the Shipping Weight)으로 하였다. 실제 선적수량은 9,100t이었으므로 B사는 $9,100t - 273t = 8,827t$ 분의 어음을 끊어서 입금하였다.

그러나 수입항에서 검량 결과 8,316t밖에 되지 않으므로 A사는 B사에 대하여 $8,827 - 8,316t = 511t$ 분의 대금반여를 요구하였다.

(3) 착오송상(Error in invoice), 부정송상(Incorrect invoice), 계산틀린송상(Miscalculation in invoice), 등

송상의 착오로 인하여 Buyer 가입은 손해를 Seller에게 구상하는 Claim이다. 말하자면 송상은 상품의 출하명세서인 동시에 사절서이므로 극히 정확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정확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송상은 출하현품과 완전 일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품이 B grade인데 송상에는 A grade로 기전하여 고가송상으로 했을 때에는 이것은 부정송상이다. 또는 현품이 상자속에 98개밖에 없는데 100개입 송상으로 하는 등이다.

원래 이 송상의 정, 부정은 Seller(Shipper)의 양심적 기전여하에 달려 있고 타의 방도는 없다. 수출어음매취은행은 어음서류/Documents for Draft)에 대하여 Shipper를 신뢰하고 다만 서류심사만 할 뿐이고 송상기전사항과 현품과를 일일이 대조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부정송상의 원인은 Seller의 고의에 기인하는 일도 있지만 부주

의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다.

둘째로 부정송상은 송상중에 계산착오가 있음을 말한다. 송상면의 계산착오는 대부분 어음매취은행에서 발견되므로 실제로 문제되는 일은 적다. 그러나 송상면의 계산이 복잡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은행에서도 착오를 발견 못하고 간과되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buyer는 claim을 청구한다.

(4) 구전부지불(Non-Payment of Commission)

수출상이 구상당하는 Claim중에서 이 종류의 Claim도 상당히 많다. 외환지불이 허가제도로 된 나라에서는 허가 수속상의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도 있으나 계약상 엄연히 Buyer에게 commission지급을 약속하고서도 모르는 척 해버리는 예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국제무역상 신용을 조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절대로 약속한 구전은 지불할 책임을 져야 한다.

(5) 대리점 구전의 부지급(Non-Payment of Agency fee)

상기와 같이 약속한 Commission을 지불치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Claim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6) 수선, 보수비(Cost of Repair)

상품 또는 포장에 상했을 때에 Buyer가 착하지에서 수리한 비용을 Seller에게 구상하는 Claim이다.

4-13 계약불이행에 관한 Claim

계약불이행(Non-performance of Contract)이라는 것은 매매의 당사자가 계약조건과 같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Claim을 말한다. 본절에서는 기타 각종의 계약에 관한 다른 Claim도 기술코자 한다.

(1) 계약불이행(Non-Performance of contract)

이것은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라고도 한다.

이 Claim의 범위는 실로 광범하고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어서 보통 [계약불이행] [계약위반]만으로 내용을 분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불이행]이나 [위반]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내용이 명시되면은 본장 이외의 타절에서 기술한 어느 Claim의 형체엔가 해당하게 된다.

즉 Seller의 Buyer에 대한 이 Claim은 대부분 [신용상에 관한 Claim등에 귀착하고, Buyer의 Seller에 대한 Claim은

(가) 품질 (나) 색과 색상

(다) 수량 (라) 손상

(마) 포장 (바) 하인

(사) 적출 (아) 수송, 보관

(자) 보험

등의 어느 Claim내에 해당하게 된다.

(2) 계약의 거절

상당시 Seller와 Buyer간에 Firmoffer, Counteroffer, Acceptance 등에 의하여 명백히 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중 일방이 계약이 성립된 것을 부인함에 의하여 생긴다.

원래 무역계약은 Seller의 Selling Firmoffer(또는 Counter Offer)에 대하여 Buyer가 Firmoffer에 대하여 Seller가 Acceptance하므로서 성립하는 것인데 법률상으로는 이것이 구두에 의했다 할지라도 확정신입인 동시에 확정승락이라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후일에 상호교환되는 매매계약서는 다만 입증서류에 불과한 것이고 계약성립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두의 신입과 수락은 후일 계약이 성립했다 안했다 상반되는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구두거래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상거래에 있어서 구

두거래가 선행함은 불가피하므로 구두로 타협이 성립되었을 시는 반드시 문서가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서로서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부인할 때에는 계약거절의 Claim이 발생한다.

실례중 몇 가지를 열거하면

(가) 수출상 A가 해외수입상 B에 대하여 10월 3일에 10월 8일 하오 5시까지 회신조건으로 전보로 Selling Firmoffer를 냈다. B의 승락반전이 10월 9일 상오 11시에 A에 도달했으므로 A는 계약불성립으로 인정하고 계약체결을 거절했다. 그러나 B는 상기 승락반신을 10월 6일에 회전하였으므로 당연히 기일내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믿고 수입지에 있는 C에게 전매하였다.

결국 전신국의 배달지연에 기인한 것이었으나 A는 계약을 거절하고 B는 계약성립을 주장하여 A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경우 A는 기일 조건의 위반을 들어 계약체결을 거절함은 당연하겠지만 10월 9일 회전을 받은 즉시 착신이 늦어서 유감이지만 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지를 했으면 B는 전매방에게 양해를 구하여 손실을 면했을지도 모른다.

A의 부주의와 불친절에 기인한 것이므로 A는 장래거래관계를 고려하여 B의 손실 일부를 부담하여 해결하였다.

(나) 매매일방의 Firmoffer에 대하여 상대방의 회전중 “Acceptance”는 “We Accept”의 의미이며 “Accepted”는 “The Offer is Accepted” 또는 “We Accepted”의 의미이다. 그러나 “Accepting”이라 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We are going to accept”의 의미로서 장래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애매한 언급 표현으로 인하여 양방간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안되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신을 받았을 때에는 전신료를 아끼지 말고 상대방의 Confirmation을 구하여야 한다.

(다) 상대방으로부터 수락한다는 답전중에 다소라도 당방 Firmoffer중 조건

의 일부를 변경하겠다는 할 때에는 수락의 효과는 없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조건변경의 수락은 전문중에 Accepted란 문구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수락이 아니고 상대방의 Counteroffer이다.

(3) 계약잔의 부당한 취소(Undue Cancellation of Barance of Contract)

계약 중 일부만 선적하고 미선적의 잔여부분을 부당하게 취소하였기 때문에 매(賣)방 또는 매(買)방에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이며 매매쌍방에 일어나는 Claim이다.

(4) 부당한 계약취소(Undue Cancellation of Contract)

천재, 지변, 금수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전량을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Claim인데 이 역제매매쌍방에 일어나는 Claim이다.

4-14 기타의 Claim

이상에서 기술한 각종 형제이외의 Claim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법률위반(Inconformity to Law)

상대국의 수입법규(Law on Import)나 관세법규(Customs Law)에 위반되는 것을 적출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Claim이다.

예를 들면 수출상 A가 미국 Chicago B사에 일본 Marker C사의 자전거 Chain을 적출하여 휴스턴항에 도착하였다.

Chain을 넣은 작은 상자에 큰 문자로 B사라 표시하고 그 밑에 극히 작고 분명치 않은 문자로 C사가 인쇄되어 있었다. 휴스턴세관은 미공법 위반으로 수입을 허가치 않았다. 상기법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공중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또는 실제의 제조국 이외의 외국에

서 제조되었다고 믿게끔 하는 명칭 또는 표시가 있는 수입상품은 미국의 어느 세관에서도 통관을 허가치 않는다] 그래서 상기 Chain은 공중으로 하여금 일견 미국의 B사제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입통관이 거부되었다. 물론 이것은 B사와 A사가 계약할 때에 B사 요청에 의한 결과이므로 전 책임은 이러한 Mark를 요청한 B사가 지어야 하나 B사는 A사에도 일부의 책임을 전가하고자 계쟁을 일으켰다. A사는 상대국 B의 법규를 모르고서 B사 요구대로 Mark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Claim을 거절했다.

이와 같은 것은 특예이나 농수산물을 수출할 적에 상대국의 검역법 (Quarantine Law)에 저촉되는 것을 수출하거나, 연분을 함유하는 유독성 도기가 상대국의 검사에 저촉되어 Claim이 되는 예가 종종 있다.

외국에 수출되는 다랑어통조림(Canned Tuna), 굴통조림, 버섯등이 수입국의 식량약품관리법에 저촉되어 반환될 경우도 있다.

(2) 수입세(Import Duty)

Seller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품질척도가 틀리는 상품을 적출했기 때문에 상대국의 수입세가 더 추가되어 차액의 손해만큼 Claim당하는 경우도 있다.(계속)